

## 2023-2024 연례 FERPA 통지서

가정 교육권 및 개인 정보 보호법(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: FERPA)은 부모 및 18 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교육 기록과 관련된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한 학부모 권리 장전(The Parents' Bill of Rights for Data Privacy and Security)은 귀하에게 추가적인 권리를 제공하며, 교육감 규정 A-820 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만약 귀하가 학생이며 18 세 이상이라면, 이러한 권리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닌 귀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.

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:

- 교육청에 요청을 접수하고 45 일 이내에 자녀의 교육 기록을 열람하고 점검할 권리가 있습니다.
  - 열람을 원하는 기록(들)을 정확히 명시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- 자녀의 학교에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통보할 것입니다.
- 자녀의 교육 기록이 부정확하거나,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, 또는 FERPA 의 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
  - 기록 변경에 관한 요청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, 변경을 원하시는 부분과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.
  - 교육청이 부모님의 요청대로 기록 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, 교육청은 부모님께 해당 결정 내용과 부모님의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.
- 자녀의 교육 기록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, 일부 경우에는 FERPA 에서 동의 없이 정보 공개를 허용합니다.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:
  -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 교육에 관한 자신의 전문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교육 기록을 검토해야 할 경우. 포함되는 학교 교직원:
    - 교육청 직원(행정담당, 감독관, 교사, 기타 강사 또는 지원 업무 직원), 및
    - 교육청에서 소속 직원들을 통해 제공한 서비스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. 여기에는 (a)계약을 통해 교육청 서비스와 행사를 제공하는 개인 및 단체, (b)교육청을 대표하는 뉴욕시 법률 부서의 변호사 등 교육청 관련 서비스 또는 행사를 제공하는 다른 정부 기관의 직원, 그리고 뉴욕시 보건 정신 위생청에 의해 고용된 학교 간호사 및 학교 보건담당 직원, (c)그 외 학교 관계자의 업무 수행을 돕는 학부모, 학생 또는 자원봉사자, 및 (d)컨설턴트 및 커뮤니티 기반 단체와 같은 자격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포함되며, 단, 학생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는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이러한 사람들은 교육 기록에서 개인

식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의 사용 및 유지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일할 것이 요구됩니다. 직접적인 감독은 서면 동의서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- 자녀가 등록을 알아보거나, 등록을 계획하고 있거나, 또는 자녀의 등록이나 전학을 목적으로 이미 등록한 다른 학교, 학군 또는 교육 기관의 관계자가 기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.
- 동의 없이 개인 식별 가능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는 또 다른 예외 사항은 특정 유형의 공개를 포함합니다.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정보 공개를 포함합니다.  
대부분의 정보 공개의 경우에는 추가 요건 및 제한이 따릅니다.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FERPA 및 교육감 규정 A-820 를 참조하십시오.
  - 감사, 평가 또는 특정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정부 기관 및 공무원 담당자에게 정보 공개,
  - 학생이 신청했거나 또는 학생이 받은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정보 공개,
  - 뉴욕시 교육청을 대신하여 연구를 시행하는 단체에게 정보 공개,
  - 인증 기관에 인증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정보 공개,
  - 18 세 이상의 학생이 미국 국세청 세금 정산 목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보고된 경우 학부모에게 정보 공개,
  - 사법 명령 또는 합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을 준수하기 위한 정보 공개,
  - 보건 또는 안전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담당자를 적절히 배치하기 위한 정보 공개,
  - 뉴욕시 교육청이 “디렉토리 정보(directory information)”로 지정한 정보 공개.
- 뉴욕시 교육청이 FERPA 규정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경우, 미연방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음 주소로 이의를 제출하십시오:

학생 사생활 보호정책 담당실(Student Privacy Policy Office)  
미국 연방 교육부(U.S. Department of Education)  
400 Maryland Avenue  
SW Washington, DC 20202-8520  
이메일 FERPA.Complaints@ed.gov